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2010. 12. 8.)

[2011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총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이경기

<의안번호 제2010 - 75호>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2010. 11. 16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2010. 11. 17

2. 제안이유

장애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장애인들이 자립적으로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직업상담, 훈련, 재활공간을 마련하고자 직업체활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함

< 장애인직업체활시설 신축현황 >

- 소 재 지 :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311-1번지
- 사업규모 : 부지 2,560m²/ 건물 2,328m²(지상 3층)
- 사 업 비 : 3,379백만원 ○ 준 공 : 2012년 12월
- 내부시설
 - 1층(776m²): 목욕장, 상담실
 - 2층(776m²): 직업훈련실, 작업장
 - 3층(776m²): 단체(단체, 시각, 농아인)사무실 및 회의실

3. 취득재산의 표시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천원)	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지목	소 재 지	면 적				
계		1필지	2,560	99,584			
1	과수원	거창읍 대동리 311-1	2,560	99,584	2011	장애인직업재활 시설 신축	이옥남

4. 참고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및 제14조

5. 검토의견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부지 매입안은 장애인이 자립적으로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직업상담, 훈련, 취업, 재활 등 장애인의 자활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거창읍 대동리 311-1번지에 부지 2,560m² 연건평 2,328m²(3층)규모로 신축하여 그 소요 사업비는 총 3,379백만원으로서
- 본 사업의 추진에 소요되는 사업비(3,397백만원) 확보계획과 향후 시설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관 련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이 경우 기준가격은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제1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 · 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 · 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 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재산의 취득 · 처분
8.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 · 처분
9. 「지방세법」에 따른 물납
10.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 · 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 ·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 · 처분
12.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 · 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로 취득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 위하여 미리 재산관리관과 협의한 재산의 취득 · 처분
13. 이미 보유 중인 부동산의 종물(從物) 또는 공작물의 대체 설치
③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1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같은 취득 · 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3.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 · 처분하는 경우
 4. 해당 재산에 인접(隣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 · 처분하는 경우
 5.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 · 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 · 처분하는 경우
 6.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승인이나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취득 · 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의 취득 · 처분에 대해서는 변경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전년도 7

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군수는 법 제1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재산관리관의 공유재산 취득·처분(안)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이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유림에 대하여는 공유림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취득·처분하여야 할 재산에 대하여는 그 소관으로 할 재산관리관이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 재산관리관은 제3항에 따라 취득·처분하여야 할 재산이 확정되거나 변동이 있으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부서의 장은 그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련한 계획을 세운 후 자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반영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